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(이하 본원)은 수료증 및 교육생 학사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알리오니,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[수집/이용 항목]

(필수항목)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(핸드폰번호 또는 전화번호, 이메일), 소속

## [수집/이용 목적]

학사관리(국토교통부 입과 및 수료보고 포함) 및 수료증, 비행경력증명서, 업무보고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·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#### [이용. 보유 기간]

DB자료는 영구히 보관합니다. (단,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)

[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]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육 운영 및 수료가 불가하며, 선택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동의 □ 동	의하지 않음
----------	--------

교육 훈련생은 언제든지 본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/삭제,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
교육 훈련생의 개인정보 권리행사(열람, 정정/삭제, 처리정지 등)를 위해서는 '개인정보변경'(또는 '고객정보수정' 등) 요구를, 삭제 및 처리 정지(동의철회)를 위해서는 '신청서'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신 후 직접 열람, 정정, 탈퇴가 가능합니다.

## 1.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, 삭제

- 가. 교육 훈련생은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/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나. 교육 훈련생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시는 경우 교육 훈련생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(신형) 등의 신분증명(사본)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다. 교육 훈련생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라. 교육 훈련생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마.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- 다른 사람의 생명/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### 2.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등

- 가. 교육 훈련생은 위 제1항 '나'에 고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,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,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나. 또한, 본원에 전화상담 등으로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다. 본원은 교육 훈련생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'본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'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.

# 무인기 조종자 양성과정 입과생 서약서

- □ 과정명 :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과정(1,2,3종)
  - 1. 본인은 위 과정의 교육생으로 입과 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제반 학사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.
  - 2. 본인은 교육 중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, 교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취급하고, 지시된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에 임하겠습니다.
  - 3. 본인은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 조치토록 교관에게 건의하겠습니다.
  - 4. 교육기간 중 날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획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, 이러한 경우 다른 교육과목으로 대체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  - 5. 본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퇴교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당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    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에 불참한 경우(지각 및 조퇴 3회는 불참 1회)
    - 나. 피교육생의 교육의지 및 열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
    - 다. 피교육생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
    - 라. 각 과정별 통과 기준 미달 시
      - 학과평가 : 100점 기준 70점 이상
      - 모의 비행평가 : 종합평가 기준 '우수(B)' 등급 이상
      - 실기체 비행평가 : 종합평가 기준 '우수(B)' 등급 이상
  - 6. 본인은 비행 실습 교육간 조종미숙으로 인한 기체 파손 시 아래와 같이 기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단, 기체 자체 결함으로 인한 파손은 제외)
    - 가. 1회차 파손 시 : 총 수리비의 "조종자 20% 부담", 교육원 80% 부담
    - 나. 2회차 파손 시 : 총 수리비의 "조종자 50% 부담", 교육원 50% 부담
  - 7. 비행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계획된 강의 시간 이외에 추가 연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, 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된 사고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, 이에 서약합니다.

2021년 월 일

**서 약 자** 성 명: (서명 또는 인)